

의안번호	제 388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8월 29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8
----------	-----

발의연월일 : 2023년 8월 29일

발의자 : 박용규 · 김현문 · 이정범
박병천 · 박재주 · 유상용
이윅희 의원

1. 제안 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어문 규정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
따른 용어 정비, 정보 공개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중등교사 임용
시험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어문 규정 띄어쓰기 반영(제명)
- 나.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개정 반영(안 제1조)
- 다. 수수료 징수 면제 조항 용어 정리(안 제5조)
- 라. 정보공개수수료 면제 대상 추가(안 제5조)
- 마.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실기평가 응시수수료 면제(별표 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별표 1]

수수료 징수 금액(제2조 관련)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응시수수료	1인당	25,0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u></p>	<p><u>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u>보호대상자</u> <p><u><신 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생략)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 ----- ----- -----.</p> <p>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지원대상자</u> 3.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7조제3항 <u>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4. (현행 제3호와 같음)

[별표 1]

수수료 징수 금액(제2조 관련)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1. 응시수수료			
	가. 일반시험	1인당	25,000	
	나. 사생활가 포함된 시험	1인당	35,000	

[별표 1]

수수료 징수 금액(제2조 관련)

구 분	종 류	기준	수수료	비 고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응시수수료	1인당	25,000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시행 2023. 2. 6.] [교육부령 제296호, 2023. 2. 6., 일부개정]

제21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를 내지 않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액을 각각 반환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23.] [대통령령 제31801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